

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(2204.10)

계약자	사회적협동조합도우누리공동체 (712-82-00303)		계약번호	52209762260000	
	(사업장) 44669 울산 남구 중앙로 311 5층 사회적협동조합도우누리공동체 (신정동)				
보험기간	2022.04.28 ~ 2032.04.28 (10년)		청약일	2022.04.28	계약형태 적용안함
1회 보험료	86,244원(월납)[기본:25,927원 + 특약:60,317원](할인후보험료: 85,381원)				

▶ 보장사항

담보별 보장내용	가입금액	납입기간 보험기간
화재손해(건물(실손)) -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·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(주택 및 주택 내 수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·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) ※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	100만원	10년납 10년만기
음식물 배상책임(1사고당) -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, 판매,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	1억원	
음식물 배상책임(1인당) -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, 판매,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	1,000만원	
[공제]자기부담금(음식물 배상책임) - ※ 1사고당 가입시 선택한 자기부담금	10만원	

우리회사는 보험계약자와 해당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보험증권을 드립니다.

이 보험증권은 GA2.7지점에서 발급하였습니다.

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
www.samsungfire.com

대표이사

洪 誠 祐



삼성화재

대한민국정부
인자제 100원
서초세무서장
후 납송인
2016년 34017호

GA2.7지점 보험대리점 한화생명금융서비스㈜(이원)

Tel : 010-2212-2182 / 010-2212-2182

협회등록번호 : 19950566110078 / E-mail :

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(2204.10)

계약자	사회적협동조합도우리공동체 (712-82-00303)	계약번호	52209762260000
	(사업장) 44669 울산 남구 중앙로 311 5층 사회적협동조합도우리공동체 (신청동)		
보험기간	2022.04.28 ~ 2032.04.28 (10년)	청약일	2022.04.28
		계약형태	적용안함
1회 보험료	86,244원(월납)[기본:25,927원 + 특약:60,317원](할인후보험료: 85,381원)		

건물(1/2)

보장사항

구분	내용	구분	납입/보험기간	가입금액	보험료(원)
특수건물여부	선택 안함				
다중이용업소 의무가입	선택 안함				
대상여부					
복합구조건물대상여부	선택 안함				
도시가스사용구분	도시가스				
가스시설지하소재여부	선택 안함				
가스배상면적구분	330.58㎡초과 495.87㎡이하				
저장시설방호벽유무	선택 안함				
요양시설업종구분코드	주·야간보호시설				
요양시설수용정원수	0000000009				
현요양시설전문인수	3				
만기(중도)금 수익자	계약자본인				

◆ 이 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◆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,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. 단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(☎ 1588-0037, www.kdic.or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
◆ 청약서 주요 내용 작성시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않았거나 자필 서명을 본인이 직접 서명(날인)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◆ 실손(보상)이란, 교체비용이나 수리복구비용을 감당한 손해액에 대하여,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일부보험이라도 비례보상을 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전액을 지급하는 상품(담보)을 말합니다.

(단,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, 보험가액을 한도로 함)

※ 보험증권은 계약체결의 증거로 발행되는 것이며, 실제 계약내용은 보험계약청약서 및 보험약관을 따릅니다.

※ 책임(보장)개시일은 당사에 보험료를 입금한날(청약일)부터 개시됩니다.

우리회사는 보험계약자와 해당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보험증권을 드립니다.

이 보험증권은 GA2.7지점에서 발급하였습니다.

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
www.samsungfire.com

대표이사

洪 誠 祐



삼성화재

대한민국정부
인지세 100원
서초세무서장
후 납출 인
2016년 34017호

GA2.7지점 보험대리점 한화생명금융서비스(주)(이원)

Tel : 010-2212-2182 / 010-2212-2182

협회등록번호 : 19950566110078 / E-mail :



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(2204.10)

보험증권 Insurance Policy

계약번호	52209762260000
계약자	(이름) 사회적협동조합도우누리공동체 (712-82-00303) (주소) (사업장) 울산 남구 중앙로 311 5층 사회적협동조합도우누리공동체 (신정동)
보험기간	2022.04.28 ~ 2032.04.28 (10년)
청약일	2022.04.28
1회 보험료	73,334원(월납)[기본:25,927원 + 특약:47,407원](할인후보험료: 72,600원)

◆ 이 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피보험대상

구분	내용
건물(1/2)	
피보험자(보험대상자)	사회적협동조합도우누리공동체 (712-82-00303)
소재지	44669 울산 남구 중앙로 311 5층 (신정동)
목적물업종	노인복지시설(노인복지시설, 노인복지회관, 경로당등)
요율적용업종	예식장(결혼식장, 장례식장등)
수용장소	증권상 표기된 건물내 분산수용함. "요양기관 정원은 영에 관한 특례적용"
층별업종	학원(정비학원제외), 일반업무시설(빌딩임대 4950㎡ 미
	만포함),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침술원, 조산소, 보건소,
	소형판매시설(슈퍼마켓, 일용품등의소매점등), 예식장(
	결혼식장, 장례식장등), 노인복지시설(노인복지시설, 노
	인복지회관, 경로당등)
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주소	(사업장) 44669 울산 남구 중앙로 311 5층 사회적협동
	조합도우누리공동체 (신정동)
건물구조급수	1급
건물구조	콘크리트조/슬라브층/콘크리트외벽
가입면적 (㎡)	346
층수(지상)	11
층수(지하)	2
화재(폭발포함)배상책임부담보특약	선택 안함
화재손해담보부담보특약	선택 안함
특수건물여부	선택 안함
다중이용업소 의무가입 대상여부	선택 안함
복합구조건물대상여부	선택 안함
도시가스사용구분	도시가스
가스시설지하소재여부	선택 안함
가스배상면적구분	330.58㎡초과 495.87㎡이하
저장시설방호벽유무	선택 안함
요양시설업종구분코드	주·야간보호시설

보장사항

구분	납입/보험기간	가입금액(원)	보험료(원)
[기본]			
화재(폭발포함) 배상책임Ⅱ(대물 1사고당)	10년납 10년만기	1,000,000,000	2,283
화재(폭발포함) 배상책임Ⅱ(사망및후유장해 1인당)		150,000,000	
화재(폭발포함) 배상책임Ⅱ(부상 1인당)		30,000,000	
화재손해(건물(실손))	10년납 10년만기	156,000,000	14,352
화재손해(시설(실손))	10년납 10년만기	50,000,000	4,600
화재손해(집기비품(실손))	10년납 10년만기	50,000,000	4,600
[특약]			
가스사고 배상책임(대인)(사망 1인당)	10년납 10년만기	80,000,000	705
가스사고 배상책임(대인)(부상 1인당)		15,000,000	
가스사고 배상책임(대물)(1사고당)	10년납 10년만기	300,000,000	153
노인요양시설소유(관리)자 배상책임(1사고당)	10년납 10년만기	100,000,000	13,743
노인요양시설소유(관리)자 배상책임(1인당)		10,000,000	
[공제]자기부담금(노인요양시설소유(관리)자 배상책임)		1,000,000	
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	10년납 10년만기	100,000,000	25,820
[공제]자기부담금(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)		500,000	

◆ 보험증권은 계약체결의 증거로 발행되는 것이며, 실제 계약내용은 보험계약청약서 및 보험약관에 따릅니다.

◆ 이 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◆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금(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 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,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금(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. 단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(임의단체 제외)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 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(☎ 1588-0037, www.kdic.or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◆ 청약서 주요 내용 작성시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않았거나 자필 서명을 본인이 직접 서명(날인)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◆ 실손(보상)이란, 고체비용이나 수리복구비용을 감당한 손해액에 대하여,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일부보험이라도 비례보상을 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전액을 지급하는 상품(담보)을 말합니다. (단,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, 보험가액을 한도로 함)